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매출채권양도(팩토링) 거래약정서

(상환청구권 있음)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앞

20 년 월 일

본 인 _____ (인)

인감대조

주 소

본인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은행”이라 합니다)과 매출채권양도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이 약정의 조항이 상충될 경우, 이 약정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제1조 매출채권양도거래의 범위

- ① 이 약정에서 매출채권양도거래라 함은 상거래로 말미암은 매출채권(어음채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매입(양수도대전의 지급), 매출채권의 관리 회수, 매출채권금융 기타 이들에 부수하는 회계, 전산정보처리, 경영상담 등 업무를 포함한 종합적인 거래를 말합니다.
- ② 은행은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매출채권양도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하여 이 약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의한 거래범위 내에서 거래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은 은행이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택하는 것에 한합니다.

제2조 유사계약의 협의 및 이중양도 등의 금지

- ① 본인은 은행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없이 이 약정에 의하여 은행에게 양도한 매출채권과 그 부수된 모든 채권에 관하여 이중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② 본인은 은행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없이 이 약정상의 어떠한 권리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하지 아니합니다.
- ③ 본인은 은행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없이 매출채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약정을 체결하거나 기타 매출채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처분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3조 양도대금의 지급

- ① 은행은 매출채권의 매입일에, 매출채권의 금액에서 매출채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거래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본인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거래이자율은 수시로 은행이 양도인에게 통지하는 이자율을 말하며, 이 계약 체결일 현재 **CD 최종호가수익율 + [*]%** 입니다. CD 최종호가수익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매출채권 매입일 직전 영업일의 3개월 CD 최종호가수익율을 적용합니다.
- ③ 거래이자율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제4조 이자지연배상금



- ①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② 지연배상금율은 은행에서 정하는 율 [여신금리 + 연체가산금리]로 합니다.
 1. 여신금리는 해당여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여신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가산금리는 연 3%를 적용합니다.
 3. 제 1호 및 제 2호에 의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률의 최고금리는 연 14.9%로 합니다. 단, 약정이자율이 최고 지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제5조 매출채권의 양도

- ① 본인은 제1조 제3항에 의하여 거래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이 발생할 때마다 이 약정에 의한 매출거래로서 은행에게 양도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매출채권(어음채권 제외)을 양도한 때에는 본인이 구매기업 겸 지급인 (이하 “채무자” 라 합니다.)으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서를 받아 확정일자를 얻어 은행에 제출하고 어음채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본인이 은행 앞으로 배서하여 교부합니다.
- ③ 제2항에서 명시한 채권양도통지서에 대해 채무자로부터의 채권양도승낙서 징구는 은행이 그 제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은행은 언제든지 그 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또 본인은 은행의 승인을 얻어 채무자 앞으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고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채권양도승낙서 원본을 제출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④ 본인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관계서류(채권보전 및 관리) 일체를 이 약정 체결일에 은행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본인이 보관할 수 있으며,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부를 요청할 경우에는 본인은 즉시 교부하기로 합니다.
- ⑤ 은행은 제1항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있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합니다.
- ⑥ 은행은 본 조에 따라 매입한 매출채권의 **미회수 잔액이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매출채권을 양수합니다.

제6조 양도의 효력

양도 매출채권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전적으로 은행에게 귀속하며 관련 인적, 물적 담보가 있는 경우 그러한 담보권 및 부수된 모든 권리도 은행에게 이전하기로 합니다.

제7조 매출채권의 회수 및 협력

- ① 은행은 제5조에 의하여 양수한 매출채권을 그 권리자로서 직접 관리 회수합니다. 그러나 제 5조 제3항에 의하여 은행이 채권양도승낙서 제출을 유예한 경우에는 본인이 은행을 대리하여 매출채권을 관리 회수하고 회수한 대전을 곧 은행에게 인도하기로 합니다.
- ② 제 1항의 매출채권 회수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은 가능한 모든 방법에 의하여 그 회수의 실현에 협력하며, 채무자가 착오로 본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본인이 즉시 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8조 매출채권의 환매

- ① 은행이 제 5조 5항에 의하여 매입한 매출채권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본인은 곧 매출채권의 환매의무를 부담합니다.
 1.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발생이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등의 사유로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된 경우
 2. 채무자가 은행으로의 채권양도를 거부하여 매출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채무자가 매출채권 발생을 부인하거나 연대보증인이 보증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4. 본인이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채권확보 관계서류의 하자로 인하여 은행이 채무자에 대하여 매출채권의 보전 및 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가 생긴 경우
 5. 은행이 양수전 이미 채무자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거나 신용상태가 악화 된 경우
 6. 양도대상 채권이 제1조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7. 본인이 채무자에게 거래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하자, 수량미달, 본인과 채무자 사이의 매출채권 액수에 관한 분쟁 등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상환기일에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8.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관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만기에 대금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②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본인이 환매의무를 진 경우에는 은행은 그 매출채권을 본인의 앞으로 재양도하는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이 경우 매출채권 재양도에 관한 채무자앞 통지는 본인의 비용부담으로 은행이 합니다.
- ③ 본인은 제1항 및 제 2항에 의한 환매의무를 진 경우 환매의무발생 이전에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매출채권대전을 곧 상환하기로 하며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환매의무 발생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의 지체일수에 대하여 제 4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④ 본인이 제1항에서 명시한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해결할 책임을 집니다.
- ⑤ 본인이 제 1항에 의한 변제 의무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날로부터 이행일까지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 4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⑥ 매출채권이 조기입금되었거나 조기 환매될 경우,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해 기정구한 기간이자는 은행이 환출토록 합니다.

제9조 통지의무

본인은 은행에게 양도한 매출채권의 채무자의 재산, 경영, 업황, 기타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칠 상황에 관한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은행 앞으로 이를 통지합니다.

제10조 약정해지

이 약정의 적용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이나 본인은 통지에 의하여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이 약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제11조 담보권의 이전

본인은 은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곧 제5조에 의하여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적·인적담보(근담보권을 포함합니다)를 은행 앞으로 이전하고 은행이 그에 관한 권리행사를 함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제12조 담보권설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칩니다.
-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 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개서·분할·병합·증액·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환급 변제충당할 수 있습니다.

■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종 별	증서기·번호	명의인 또는 위탁자	금 액 (계약액)	20 까지 입금누계액	증서일자	지급기일
	계좌번호	수익자				



주의 : 채무자 본인명의 담보인 경우에만 본란을 사용합니다.

⑤ 본인이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기재된 담보 이외에 다른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은행은 담보목적물의 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담보목적물에 접근 또는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① 본인은 이 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구 분	20 .	20 .	20 .	20 .	20 .
부 채 비 율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비율	%	%	%	%	%
()비율	%	%	%	%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
2. 이 약정에 따른 자금용도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본인은 이 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은행이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은행 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4조 자료의 제출 등

① 본인은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3. 매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제15조 진술 및 보장, 기한전 변제 의무 등

- ① 본인은 이 약정 체결일 및 각 거래 실행일에 은행에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진술 및 보장합니다.
 1. 본인은 그 설립준거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 본인은, (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나) 자기명의로 자산을 소유하고, (다) 이 약정에 따른 채무 기타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라) 이 약정 및 이 약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들을 체결, 교부하며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적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본인은 이 약정 및 이 약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들을 체결, 교부하고, 그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업 내부의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4. 본인은 이 약정의 체결, 교부 및 그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유효,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며, 이러한 인허가상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5. 이 약정에 따른 본인의 의무는 유효,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으며, 이 약정의 제조건 및 법률에 따라서 유효, 적법하게 이행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에 의한 이 약정의 체결, 교부 및 이행과 이 약정에 따른 본인의 지급은 (가) 본인에게 적용되는 어떠한 법령에도 위반되지 않고, (나) 본인의 정관에 위배되지 않으며, (다) 본인이 당사자이거나 본인의 자산에 효력을 미치는 어떠한 계약상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해당 계약상 채무불이행사유를 구성하지도 않습니다.
 7. 본인의 재정상황 또는 본인의 이 약정 이행능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 소송이나 행정절차 또는 중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으며, 본인이 아는 한 그러한 조사, 소송이나 행정절차 또는 중재가 제기될 우려도 없습니다.
 8. 본인은 이 약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은행이 요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은행에 제공하였어야 할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본인이 아는 한 그러한 정보는 정확합니다.
 9. 본인은 각종 지급의무를 이행할 자력이 있습니다.
- ②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은행의 매출채권 양수일에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이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기한전의 변제 사유
 2.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기재된 사유
 3. 동 15조 제3항 각 호에 기재된 각 사유
- ③ 본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4항에 따라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1. 본인이 이 약정 상 채무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공한 보증, 담보 계약 및 신용보강약정의 위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 법원의 최종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있는 후에 그 판결 또는 명령에 따른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
 3. 본인이 이 약정상 확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위반사항이 시정 가능한 것인 경우 은행으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본인이 이 약정에 따라 제공한 진술 및 보장이 허위이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5. 본인이 이 약정 외에 다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계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④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정에 따른 거래의 실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도 은행은 그로 인한 영업상 기대이익의 상실 등 본인의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 동의합니다.
- ⑤ 본인이 이 약정을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은행이 손해, 손실, 비용 또는 채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은행에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16조 협의사항



이 약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

제17조 기타 특약사항

본인 :

(인)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본인 :

(인)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수입인지 첨부란)